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2008년 6월 pp.43~72
한국세무학회

소득 포괄주의 과세 도입에 관한 연구

오 윤*

<요 약>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소득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소득세제상 과세소득의 범주를 연구하였다.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이 과세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의도적으로 과세를 배제하는 것 때문이며 소득 개념을 열거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 것으로 분석하였다.

외국의 세제동향을 보면 1980년말 이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조세경쟁의 대열에 동참하여 왔다. 과세기반의 확대는 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주를 확대하는 이외에 비과세 및 공제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과세소득 범주의 확대는 세법상 소득개념의 포괄화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열거된 과세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포괄적 소득개념을 도입한 나라는 미국인데 그곳에서도 소득의 개념이 성문법상 정의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판례법상으로 개념이 발전하여 오고 있는 정도이다.

이와 같은 국내의 법제의 동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이 열거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등 과세기반의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포괄주의 과세는 과세기반의 확대와 그를 통한 형평성의 제고 이외에도 중립성과 간편성의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제상 소득개념을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당위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포괄화의 장단점을 고루 반영하는 방향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완전 포괄화는 확실성의 가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유형별로 해당 소득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의 방식에 의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개념의 포괄화는 암묵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수익금액과세가 아닌 소득금액 과세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소득개념을 보다 더 포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한다면 각 종류의 소득 내지 전체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정할 필요경비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세기반의 확대와 세율인하를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세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소득세, 포괄적 소득, 과세소득, 과세표준,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 형평성, 중립성, 단순성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ohyoan@hanyang.ac.kr, 02-2220-2777

I. 문제의 제기

‘소득’은 일정 기간 누군가에게 귀속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득이 인에 귀속한 이상 그가 지배,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정부에 세금으로 낼 수 있는 담세력을 나타내게 된다. 세법이 이러한 담세력에 착안하여 소득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그것이 어떤 계기에 의해 귀속하게 되었는지를 불문하게 된다. 실제 세법이 소득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한다면 모든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에서 ‘소득’으로 하여 과세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을 것이지만 각 소득의 특성에 따라 비용이나 공제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데 있어 방법론상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기는 하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공통된 현상이다. 소득세법을 예로 들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여러 유형의 소득을 열거하고 이를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해당 소득그룹마다 별도의 납세의무확정방법을 설정하고 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개념은 사회 일반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세법 독자적인 목적에 따라 원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차용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고유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은 세법에서 소득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개념이 된다. 세법이 소득이라고 규정한 대상들의 집합체의 명칭인 것이다.

소득세법은 개인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의 가액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무상이전 중 증여를 예로 들면, 증여를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증여받은 경제적 이익이 여타의 경제적 이익과 비교하여 갖는 특성을 감안한 입법정책의 소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간에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해 별도의 소득금액계산 방법 및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2003년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소위 ‘완전포괄적 증여’개념을 도입하였다. 그간 동법에서 사용된 ‘증여’의 개념은 민법상 ‘증여계약’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세법상 고유개념으로서 ‘증여’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법체계상으로 본다면 획기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현재 완전포괄적 증여규정의 도입에 따라 실제 증여과세상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다만, 측문하는 바에 의하면 아직은 선언적 효과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전포괄적 증여개념을 도입한 것은 열거방식에 의하는 경우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이익의 이전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에 귀속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과 중립성의 이상에 부응한다는 단순한 명제에 입각하여 본다면 경제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왜 그와 같은 개념 정의를 시도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 소득과세상 포괄적 소득개념의 도입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논한다. 포괄적 소득개념을 도입한다면 그것은 소득과세의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과세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포괄적 소득개념을 도입하는 데에는 완전포괄적 증여개념의 도입과 현재의 운영실태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완전포괄적 증여개념이 도입된 지 수년 밖에 경과하지 않아 아직 그 공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현재로서는 증여과세에 의한 세수의 증가는 괄목하지는 않으면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은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완전포괄적 개념이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소득과세의 기반 확대를 위해 굳이 포괄적 소득개념을 도입하는 대신 또는 그것에 앞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각국의 세제개혁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과세기반의 확대는 세율의 인하와 함께 현대 소득과세제도개혁의 화두가 되어 있다. 각국의 소득세제개혁동향에 대한 분석은 포괄적 소득개념의 도입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보다 바르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구분할 것은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조세회피방지규정과와의 관계이다. 비록 과세대상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마치 포괄적 개념을 도입한 경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요건으로 적용되는 것인 반면, 포괄적 과세대상의 개념은 그러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의 규정인 것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에서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제외한다.

II. 현행 세제상 소득의 개념과 범주

1. 소득의 개념

소득은 누군가에게 귀속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소득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그 개념이 기능하는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변형하는 살아 있는 무상의 개념이다.¹⁾ 그런 무상성에 불구하고 소득은 인에 귀속한 이상 그가 지배,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담세력을 나타내게 된다. 이에 따라 세법이 이러한 담세력에 착안하여 개인에 귀속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면 모두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²⁾ 그것이 어떤 계기에 의해 귀속하게 되었는지를 불문하게 된다. 물건을 팔거나 근로를 제

1) 이태로, “과세소득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6, p.119

2) 실제 미국에서 1894년 관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득세제에서는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소득의 하나로 보고 있었다. 동 세제는 다른 이유로 위헌으로 판정되어 폐지되었다. 이후 세제에서는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소득으로 포함하는 입법은 없다. 현행 세법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소득의 개념에서 배제하지는 않고 과세 소득 계산상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IRC Section 102). 이는 주공채나 지방공채로부터의 이자에 대해

공하는 것 이외에도 길 가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하였다거나 누군가에게 잘 보여 증여를 받았을 수도 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통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비용을 지출하거나 수고를 하여야만 한다. 다만, 그 다과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제 세법이 소득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한다면 모든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에서 '소득'으로 하여 과세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소득의 특성에 따라 비용이나 공제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데 있어 방법론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증여를 받아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는 공제할 비용이 없거나 거의 없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 소득과세 체계

(1) 과세소득

소득세법상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1조).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동법 제3조).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동법 제4조). 종합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동조 제1호). 퇴직소득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이다(동조 제2호).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다(동조 제3호).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6조 내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다(동법 제14조 제1항). 여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이 합산되지 않는다(동조 제3항).

(2) 소득금액 계산

각 소득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예로서 종합소득 중 제일 앞에 규정된 이자소득과 마지막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및 …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에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한다(동법 제16조 제1항).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동조 제2항).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상금…에 준하는 금품…알선수제…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한다(동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동조 제2항).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동법 제24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동법 제27조).

과세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IRC Section 103). 채무면제이익은 소득으로 보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된다(IRC Section 108).

나. 세법상 '소득'개념의 설정

(1) 소득세법

소득세법 어디에서도 '소득'의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각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도 해당 소득의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그 소득에 포함될 경제적 이익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³⁾ 이자 소득을 예로 들면 '국가 또는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첫 번째 이자소득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의 '이자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며 국채의 발행에 관한 실정법상 '이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의미가 없다.

결과적으로 소득세법상 '소득' → '종합소득' → '이자소득'의 규정 단계상 어느 하나에 있어서도 세법 독자적인 '소득'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이 이와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익 중 과세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각 그룹에 대해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과세소득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면 과연 실제 과세소득은 경제적 이익 중 얼마만큼 포섭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상 '소득'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동일하다. 다만, 법인세법은 사실상 법인의 소득을 좌우하는 익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4조)고 규정하고, 익금과 손금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익금은 '...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손금은 '...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 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소득의 개념을 바로 정의하지 않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개인 과세소득의 범주

소득세법이 과세소득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동법이 설정하는 과세대상소득이 세상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소득 중 어느 정도 과세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일은 매우 어려운

3) 다만, 퇴직소득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소득'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각각의 소득에 대한 규정에서 포함될 경제적 이익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개념 정의에 의미를 부여하기 곤란하다(동법 제22조, 제94조).

일이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먼저 ‘소득’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중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무엇이며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할 것인데 세법이 스스로 ‘소득’의 개념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구분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과세했어야 할 세액과 실제 과세한 세액을 비교하여 조세격차(tax gap)를 계산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또한 조세특례가 없었다면 과세했어야 할 것과 실제 과세한 것을 비교하여 조세지출예산(tax expenditure budget)을 작성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⁴⁾ 이에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보아 일 개인에 귀속하는 이득이지만 과세에서 배제되고 있는 그룹을 식별해내고 그것들을 실제 과세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소득과 세의 전체적인 모습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 제한된 소득과세의 기반

소득세법상 개인의 과세소득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적인 규정⁵⁾, 각 종류의 소득에서 유사 포괄주의적인 규정⁶⁾ 그리고 그 범주를 확대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을 고루 살펴볼 때 실제 현존하는 경제적 이익 유형 중 정부가 정책적인 목적이 없이 과세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뚜렷이 거론할 만한 것을 찾기 곤란하다.

(1) 정책적 과세배제

소득세법상 과세기반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때문에 그 범주가 많이 축소되어 있다. 소득과세의 기반이 완벽하지 못한 것은 소득세법이 소득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

개인에 귀속하는 경제적 이익이지만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 중 주요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소득세법은 ‘증여’를 계기로 한 경제적 이익을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다음 양도소득과세상 다음의 자산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 주식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채권 :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액면가액보다 저가로 매수한 것에 대해서는 할인액으로 과세하지만 유통시장에서 장부가액보다 채권을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 외환 : 외환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 서화골동품 : 창작품에 대해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은 과세하면서 소장하던 자가 매도하여 얻는

4) tax gap이나 조세지출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에 대해서는 John L.Mikesell, Tax Expenditure Budgets, Budget Policy and Tax Policy : Confusion in the States, Public Budgeting&Finance, Winter 2002, pp.34~51참조

5) 예를 들면 이자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중 제13호의 ‘제 1호 내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6) 예를 들면,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는 부분을 들 수 있다.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성격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파생상품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나 옵션거래를 하여 얻은 적법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나)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것

소득세법 규정상 각 소득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열거된 것들이다. 이와 같이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것들은 소득세법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2) 새로운 유형의 소득에 대한 과세 미진

위에서 소득세법상 개인의 과세소득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적인 규정, 각 종류의 소득에서 유사 포괄주의적인 규정 그리고 그 범주를 확대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을 고루 살펴 볼 때, 소득세법상 과세기반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때문에 넓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며 소득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이는 현재로서는 과세기반의 확대를 위해 미래를 고려할 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포괄적 소득개념은 새로이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소득에 대해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소득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우선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적인 규정은 해당 유형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자소득을 예로 들면, ‘제 1호 내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포괄적 성격의 규정에서 ‘제 1호 내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의 부분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의 부분의 범주를 제약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이 출현할 때 ‘제 1호 내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한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현행 소득세법으로는 어느 소득유형에도 들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엔화스왑예금과 같은 복합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상 단순파생상품을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에 열거된다고 하여 바로 복합파생상품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을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득을 자본이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미국세제상으로도 복합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위해 해당 거래를 세법상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상기하여야 할 점은 그러한 특례규정은 미국 세법상 소득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파생상품에서 가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일단 소득으로 확정하고 소득금액계산이나 과세시기 설정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이다. 만약 그러한 포괄적인 소득개념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복합과생상품에 대한 과세 자체가 문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이자소득에 유형별 포괄주의적인 규정이 삽입되어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과세상 논거를 보완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제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 소득개념을 도입한다면 새로운 유형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빈틈이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예로서 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최근 금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gold indexed note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과세가 곤란하다. 금의 가치에 연계한 gold indexed note는 더욱이 원본의 지급이 없기 때문에 채무증서가 아니다. 더 나아가 gold indexed note를 이용한 복합과생상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나. 증여개념과의 관계 설정

(1) 증여의 본래적 성격

(가) 증여과세의 이중적 측면

증여는 증여하는 자에는 지출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증여를 받는 자에게는 소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상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전자는 지출에 대한 간접세적인 성격을 후자는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증여세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증여가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개인소득과세를 보완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의 가액은 받은 자의 경제적 능력을 그만큼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소득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치 증여자가 보유하고 있을 당시의 자본이득을 수증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시점에서 실현하되 그것이 자신에게 실현된 것과 유사하게 과세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지출이 될 것이지만 증여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의 증가이므로 본질적으로 소득과 다를 바 없다.

(나) 증여과세상 잠재하는 논리적 모순의 가능성

증여에 대한 과세는 이론적으로 이전을 한 자 및 받은 자 각각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모순이 있다. 우선, 무상이전을 한 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과세한 소득이 축적된 것을 다시 한 번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적인 과세라는 항변이 가능하다. 다만, 무상이전도 지출(expenditure)의 하나로서 일반적인 소비(consumption)와 다를 바 없다는 관점에서는 간접세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⁷⁾

다음, 무상이전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는 바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에 대해 바로 과세하는 성격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원가 0로 취득한 재산을 시가로 매도한 것처럼 보아 과세하

7) 이런 관점에서 무상이전세를 본다면 현금흐름에 대해 과세하는 cash flow tax가 보다 용이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증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는 공제할 비용이 없거나 거의 없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⁸⁾ 예로서, 현물을 증여받은 것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증여로 볼 수도 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물건을 양수한 것을 강조한다면 증여가 될 것이지만 이것은 원가는 0인데 시가는 양(+)인 것이므로 바로 자본이득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귀속하는 경제적 이득은 (증여자의 자본이득) + (증여자의 취득원가) = (자신의 자본이득)인 것이다. 다만, 미실현이득이므로 실현될 때 소득으로 과세할 성질의 것인데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⁹⁾

증여가 갖는 이중성에 불구하고 우리 세법은 수증자의 입장에서 과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세법은 소득과 증여간의 개념구분을 분명히 하고 과세상 우선순위를 설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제도를 설계할 때 증여를 계기로 과세에서 배제되는 자본이득부분은 없는지, 수증자에게는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닌지(그 경우 과세를 완화할 필요는 없는지)를 고려하여야 타당할 것이다. 현실은 우리 세법상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며, 2004년에는 완전포괄증여 개념이 도입되게까지 온 것이다.

(2) 증여 완전포괄과세의 영향

(가) 증여 완전포괄과세의 의의

상증세법상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상증세법 제2조), 수증자는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상증세법 제4조). 그리고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및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¹⁰⁾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에 포함된다(상증세법 제2조 제3항).

현재로서는 과연 증여 완전포괄과세 규정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가늠하기 곤란하다. 현재로서는 동 규정과 관련한 쟁송의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상 질의회신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 8) 상증세법상 수증자는 재산을 이전받거나 기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보고 그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일응 법인세법상 개인에게 익금으로 보는 사항이 발생하되 그것이 타인의 무상 또는 저가의 재산이전 또는 기여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증여가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 9) 우리 헌법상 미실현이득 자체가 위헌적이지 않다는 것은 결론이 난 사안이지만 세계 각국의 과세제도를 보면 미실현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 10) 증여포괄과세는 열거주의 → 제한적 포괄주의 → 유형별 포괄주의 → 완전포괄주의로 발전해 온 것이라고 한다(재경부,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해설, 2004.2).

1. 지분변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변동시마다 계산하고, 출자지분초과분 분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2005.11.30)
2.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6, 2007.5.16)¹¹⁾
3. 분양권¹²⁾, 주식형 펀드와 해외펀드구좌도 증여세 과세대상¹³⁾

위 1, 2 및 3의 질의회신은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는 회신의 근거로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들고 있지만 1번의 질의회신은 마치 주식회사에서 불균등배당에 유사한 경우, 예를 들면, 상증세법 제39조 불균등증자와 같은,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 과거 ‘기타의 증여의제’ 조항이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으로도 증여로 볼 수 있는 사항이며, 제2의 질의회신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면 될 사항이며, 3의 질의회신들은 증여세과세대상 ‘재산’으로서 이미 과세되던 것들이다.

위 질의회신 내용으로 짐작한다면 완전포괄증여과세규정 도입의 파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중과세적인 성격을 갖는 증여세의 과세기반이 포괄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 무상이전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득으로 과세된 것이 한 번 더 과세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이전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를 받을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무상이전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무상이전을 하는 자의 소득으로 한번도 과세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기여’는 주로 그 타인의 인적 자본의 투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타인에게 귀속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자는 해당 타인의 소득을 이전(assignment)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제대로 세법을 적용한다면 실질귀속원칙에 따라 해당 타인에게 우선 소득이 귀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세후소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는 어떤 자의 기여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타인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그 어떤 자의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등을 입증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이득의 발생경위에 대한 입증과정에 대해 숙고 없이 바로 모든 이득을 재산소유자의 수증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11)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부등본상 ○○○문중으로 등재되어 있는 ○○시 ○○동 소재 임야 27,213㎡을 법원 판결에 의거 ★★★가 소유권이전등기 받아 양도하고자 하는 사건이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1986년 4월 접수 000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1년 1월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 이행하였으며, 위 가등기 지분 중 일부가 △△△에게 이전되었고, ★★★에게 형식적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 개인소유로 인정하여야 한다.

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2007.5.11 ; 서면4팀-1863, 2005.10.12

13) 서면4팀-1132, 2007.04.06

(나) 증여만 완전포괄 과세되는 것이 문제인지?

위와 같이 완전포괄증여 규정의 도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증여세 자체가 갖는 논리적 모순을 증폭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완전포괄증여규정의 도입으로 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거나 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전포괄증여규정은 열거주의 방식의 소득규정과 관계에서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1) 소득과세와의 형평성

개인소득과세 기반은 영성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소득과세를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 증여과세는 포괄화되는 것이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각국의 무시할 수 없는 동향은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이중적 과세이기 때문에 완화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각국이 조세경쟁을 함에 있어 거주지국가로서의 매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논리적으로도 흠결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유리하지 않은 방향의 선택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증여과세의 포괄화가 주어진 현실임을 인정한다면 과세상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 개념의 포괄화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던지게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A가 스스로 파생상품거래를 하여 이득을 얻을 때에는 소득과세를 받지 않는데 B의 기여에 의해 A가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이득이 발생하게 된 경우 A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연스럽게 조세제정에 의한 조세절약의 유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2) 불확실성의 증대

과거 열거방식(내지 불완전포괄방식)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할 당시에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 모두 열거한 것에 대해 각각의 조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세법이 한가지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동시에 과세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곤란한 일이었다. 상속세법상 ‘증여’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게 되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이 증여도 되고 소득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를 인지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설사 확인하여 그것의 부당함을 주장할 경우에는 소득 또는 증여 중 하나로 임의로 과세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내하여야 하게 된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부과’될지 납세자로서는 구분하기 곤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⁴⁾

14) 아래의 사례 중 1.은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이고 2. 3 및 4.은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이다.

1. 외형상으로는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를 가장한 실질적인 증여일 개연성이 높아 양도가액 중 시가에 상당하는 부분만이 양도소득금액대상이 되고 시가를 초과한 양도가액은 증여로 인한 소득으로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국심 97서2427, 1999.6.1 합동회의)
2.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사용인 등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

1971년 이래 다음과 같은 조문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는 미국세법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과는 대미된다. 미국세법은 소득개념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그 중 증여가 되는 부분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 세법은 둘 중 하나의 개념이 다른 하나를 포괄할 수 있다는 식의 개념 구성방식을 취하지 않고 한 가지 세금이 부과되면 다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경제적 이익이 두 가지 과세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인정된 것이 된다.

3) 완전포괄증여세제상 소득개념과의 구분의 논리적 비일관성

① 소득의 성격이 짙은 것을 포괄증여의 사례로 본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한 경제적 이익은 미실현이득으로서 아직 과세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소득을 미리 과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미국의 사례이지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¹⁵⁾ 이에 따라 다른 이에게 보상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비록 그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확정적인 재무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¹⁶⁾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가 신탁의 형식을 빌리든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하든, 증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재산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우리의 경우 상증세법은 제2조 제3항에서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당하는 경우로써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2006.6.20).

3.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2, 2006.8.18).

4. A,B,C는 모두 특수관계자이며 B법인이 보유한 관계회사(A법인)주식을 A법인의 대표인 C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B법인과 C가 특수관계자이므로 B법인 결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C에게 상여처분하고 C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며 C에게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음(재3 46014-2270, 1997.9.25)

15) IRC Section 2501(a)

16) Comm. v. Hogle, 165 F.2d352(10th Cir. 1947)

보고 있다. 증여는 ‘재산’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용역’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일반적 통념에 대한 예외를 이루는 부분이다. 아무리 정교한 논리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기여에 의한 가치증분을 분리해내는 것은 인위적인 작업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는 미실현이득을 미리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포괄증여의 개념에 포섭될 사항이지만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거주자, 비거주자 및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의 본질은 증여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3호). 여기서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확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 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써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를 말한다(동법시행령 제41조 제8항). 증여과세가 포괄주의 과세로 전환된 점이 미처 소득세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규정은 소득과세와 증여과세가 상호 분리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소득세법이 스스로 밝혀 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자본거래¹⁷⁾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로 보지 않고 해당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이 된다(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자목). 이는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과 대비된다.

• 법인의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담한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여를 받은 이득은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며, 해당 수증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증여나 상속의 사건에 대한 간접세(indirect tax, excise tax)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3. 소득의 범주와 과세표준계산

소득개념의 완전 포괄화는 암묵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수익금액과세가 아닌 소득금액과세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한다면 그것은 순자산의 증가분과 소비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으로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금액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과세상 형평성은 어떤 소득은 과세하

17) 불균등 분할, 합병, 증자 내지 감자 등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는데 다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데서도 문제되지만 어떤 소득은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다른 소득은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한다든지 어떤 소득은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데 다른 소득은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위한 각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다. 형평성 측면에서 소득과세를 논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세의 범주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다른 요소들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의 범주가 비록 소득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연구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사항이다.

어떤 소득은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지만 다른 소득은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할 경우라도 전자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할 경우 그러한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소득의 개념과 그것의 범주에 대한 논의는 소득과세의 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상 형평성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4. 소결론

본 절에서는 현행 소득세제상 개인 과세소득의 범주가 과연 경제사회에서 개인이 가득하는 소득을 어느 정도 포섭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접 개념인 증여와의 관계에서 각각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념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과세소득의 범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제사회에서 개인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계량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주를 추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수관찰방법에 의하든 아니면 미국의 NRP 방법¹⁸⁾과 같은 실제 세무조사의 방법에 의하든 매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주로 소득개념의 법학적 정립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연구는 별도의 과제로 남기는 한편, 법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이 과세에서 배제되는 것은 포괄적 소득개념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주요한 몇 가지 소득을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개념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증여와의 관계에서는 증여과세가 포괄화함에 따라 증여과세와 소득과세간 형평성에 문제가 커지게 되었으며, 소득으로 구분할지 증여로 구분할지 불확실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소득과세와 증여과세가 이중과세될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포괄증여 개념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을 소득으로 보는 문제도 남아 있다. 그리고 미실현이득이므로 실현할 때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을 증여로 과세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는 증여 개

18) National Research Program으로서 임의표본추출방식에 의한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념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개념의 완전 포괄화는 암묵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수익금액과세가 아닌 소득금액과세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소득개념을 보다 더 포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한다면 각종 종류의 소득 내지 전체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정할 필요경비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소득은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지만 다른 소득은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할 경우라도 전자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할 경우 그러한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Ⅲ. 외국의 세제 동향

1. 추세적 경향—과세기반의 확대, 조세중립성의 제고 및 세율의 인하

각국의 세제는 1980년대말 이래로 과세기반은 확대하고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경제가 시장화되고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세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왔다. 그리고 경제가 개방화함으로써 인적 물적 자원의 국제적 교류에 대한 벽이 허물어지게 되자 일정 국가 관할 내 세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과세기반의 일실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또한, 국민의 조세부담율은 지속 증가(2000년대에는 현상 유지 수준)하여 왔는데 세율은 낮추었지만 세수가 증가한 것은 과세기반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져 온 것도 하나의 추세로 이해된다. 직접세는 한 개인에 귀속하는 소득을 기본적으로 해당 개인이 집계하여 신고하는 것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징수하지만(물론 많은 세수가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됨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간접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 징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이 많은 경제체제 내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용이한 수단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회전율이 높은 음식점에 가면 돈부터 받고 음식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 질서의 변화는 소득세제에 대해서도 여러 새로운 시도를 촉발하고 있다. 1950년대의 지출세(expenditure tax), 1970년대의 현금흐름세(cash flow tax), 1990년대 초 북구국가의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ation), 그리고 최근의 동구국가를 중심으로 한 단일세율제(flat rate taxation)가 그러한 것들이다. 이와 같은 창의적인 세제의 도입시도는 소득세제가 지향하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이다. 이들 아이디어들에 흐르는 공통점은 (지출세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경제생활을 단순화하여 보고 소득과세 상 수직적 형평보다는 수평적 형평을 강조하는 것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누구나 일정 율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을 기본적인 아이

디어로 하는 것들이다.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ation, DIT)는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고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단일(또는 복수)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자는 자신의 순자본소득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자본소득은 국제적 유동성(mobility)이 높아 개인에 귀속하는 순소득을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할 경우 누설만 있고 얻는 것은 적다는 경험에 따라 단일(또는 복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순자본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 소득금액보다 적은 사람만 선택에 의해 신고하여 환급받도록 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는 결국 신고납부보다는 원천징수에 의존하게 되는 방식이다.¹⁹⁾

단일세율(flat rate tax)세제²⁰⁾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처럼 소득에 대해서도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자에게는 지출(expenditure)이므로 부가가치세와 무상이전세를 병합하면 지출세가 될 것이다. 이는 Haig-Simons의 소득개념에 따라 아래 (1)의 등식 중 (소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한 개인이 평생 누적한 (저축)을 누군가에게 이전할 때 그것을 (지출)로 보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도로 지출세가 존립할 수 있게 된다.

$$(\text{소득}) = (\text{저축}^{21)}) + (\text{소비}) \quad (1)$$

즉 자산의 무상이전도 (소비)와 다를 바 없는 (지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 등식 (1)에서 좌변에 한번 과세하고 우변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격이다. 소득세를 이미 낸 다음 가져분소득에 대해 우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래 등식 (2)와 같을 것이다.

$$(\text{소득}) = (\text{저축}) + (\text{소비}) + (\text{소득세}) \quad (2)$$

이 경우 지출세(expenditure tax)는 다음 등식 (3)에서 우변에 대해 과세하는 격이다.

$$(\text{소득}) - (\text{소득세}) = (\text{저축}) + (\text{소비}) \quad (3)$$

실제 자기가 지출하는 금액 중 국고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지출은 다음 등식 (4) 중 ‘(순저축) + (순소비)’가 될 것이다.

$$(\text{소득}) - (\text{소득세}) = (\text{순저축}) + (\text{순소비}) + (\text{지출세}) \quad (4)$$

19) 물론 EU는 역내 개인에 귀속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거주지국에 이자 지급사실을 통보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는 EU Savings Directive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주지국에서 단일세율(또는 복수세율)로 과세한다면 거주지로 자기 나라를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 Estonia, Russia, Slovak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21)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출세에 대한 세율을 10%로 하고, 소득세도 10%로 한다고 가정한다면²²⁾ 모든 현금(또는 현금등가물)의 ‘이전’에 대해서는 현금의 지급자나 수령자 어느 한 사람에게 원천징수 또는 대리납부의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현금의 ‘이전’이 없이 재산이 생긴 경우(길 가다가 보물상자를 줍거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차후 그 재산을 이전하면서 받는 현금을 ‘이전’받을 때 소득세를 내면 된다.²³⁾ 순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에 있어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처럼 징수한 세액과 징수당한 세액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개별 납세자가 신고하여 환급받아가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현금흐름세(cash flow tax)에 연결되는 것이다. 평생 100을 벌어서 100을 지출(예를 들어, 구성비는 문제 안 되지만, 60을 자기를 위해 쓰고 40을 상속)한 자는 세금을 19만큼 내게 된다.

이러한 각종의 아이디어에 흐르는 근본적인 생각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과세기반의 확대와 조세의 시장개입의 최소화이다. 이와 같은 철학은 비록 혁신적인 세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과세기반의 확대와 이원적 소득세제요소의 도입 및 상속 및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과세의 완화 내지 폐지이다.

2. 소득과세기반의 확대

가. 소득의 개념과 규정방식

각국의 실정법상 과세소득의 범주를 설정하는 방식은 포괄주의와 열거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포괄주의방식은 미국과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한편, 열거주의 방식은 영국, 독일 및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⁴⁾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소득의 개념은 성문법상 정의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판례법상 개념이 발전하여 오고 있는 정도이다. 일본에서는 과세소득을 10가지로 열거하고 있지만 마지막 잡소득을 ‘그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적 연금 등과 기타의 잡소득’으로 정의하고, ‘기타의 잡소득’은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소득을 총칭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포괄주의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 정작 소득의 개념은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나. 과세기반의 확대

각국은 자국세제가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를 저해하고 자국자본의 국외유출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노력을 하여 왔다. 반면 국민의 조

22) 실제 슬로바키아국은 2004년부터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 동일한 19%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3) 현금이 이전 없이 실물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출로 보는 조치가 필요하다.

24)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이텍스, 2007, pp.38~63

세부담율은 지속 늘고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출규모는 팽창하여 오고 있다. 이는 정부로 하여금 과세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을 배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각국 정부는 소득세 납세인원의 증대, 소득과세기반의 확대 그리고 세무행정의 과학화로 대응해오고 있다. 우선 소득세 납세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EITC²⁵⁾와 같은 지출프로그램으로 납세인원을 증대하는 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소득과세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세제의 틀을 지키기 위해 CFC²⁶⁾ 제도를 도입하고 ATP²⁷⁾에 대한 대응세제를 갖추는 방법으로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한편으로 과세상 포괄적 신고납부보다는 열거에 의한 원천징수에 더 의존해가고 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²⁸⁾과 공제항목을 축소하는 경향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 소득개념의 포괄화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3. 이원적 소득세제 요소의 도입

1990년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및 덴마크에 도입되기 시작한 이원적 소득세제는 일견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두 종류의 소득에 대한 차별적인 세율의 적용으로 수평적 형평을 잃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네덜란드는 Box system²⁹⁾이라 불리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첫째, 자본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은 자본이 자본소득을 누적적으로 낳는 성격을 감안한다면 노동소득에 비해 낮게 과세할 필요가 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물가상승분만큼 세금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비용은 여러 경로로 공제하는 제도가 열려 있는데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그러한 혜택이 없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본은 노동보다 국제적인 이동성(mobility)이 높기 때문에 고세율국가에서 자본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고세율로 과세할 경우 자본의 유출을 심화시킨다. 특히 거주지국과세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거주자의 국외원천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여야

25) earned income tax credit로서 우리의 근로장려세제를 의미한다.

26)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taxation로서 우리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조세피난처세제와 유사한 것이다.

27) aggressive tax planning, 공격적 조세회피, 주로 세무대리인들이 의뢰인의 조세회피를 도와주는 것으로서 유사한 유형을 복제하기 용이하여 과세기반의 잠식부작용이 큰 것을 의미한다.

28) 이원적 소득세제와 단일세율제도는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한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최근 주요 OECD 국가(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의 (국세+조세지출) 대비 (조세지출)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박명호, 정희선,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 조세연구원, 세법연구 09-03). 우리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비과세감면액 증가율이 8.6%로서 국세증가율 7.3%를 상회하고 있는 형편이다.

29) 세율을 인화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제도 개혁이다. 공제항목들을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부유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과세제도를 자본에 대한 간주소득(imputed income)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바꾸었다. 이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과세상 중립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다.

셋째, 자본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조세제정의 소지를 감소시킨다.

넷째, 자본소득과세상 비용공제가 용이하지 않아 조세부담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³⁰⁾

이러한 장점에 불구하고 크게 처지가 다르지 않은 고세율의 OECD 국가들에서 전폭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이유는 동 세제가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세제이며,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자본소득적인 측면과 노동소득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분할하기 곤란하며, 다른 나라는 포괄적 소득세제에 입각해 있는데 자기 나라만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할 경우 국외원천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자본소득에 대해서보다 중과하게 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많은 국가에서 포괄적 소득과세제도는 유지하면서 이원적 소득과세제도의 성격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오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방식의 과세제도를 좀 더 폭 넓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OECD³¹⁾의 보고서에 의하면 불완전하나마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태리, 폴란드,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벨지움,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일본은 semi-DIT국가로, 캐나다, 독일³²⁾, 아일랜드, 한국,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및 미국은 semi-comprehensive taxation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의 해소 폭이 적어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여타 소득에 대한 세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후자의 그룹에 편입되어 있지만 연구자의 소견으로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대부분이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semi-DIT국가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무상이전과세 완화의 움직임

가. 과세완화의 움직임

앞의 등식 (4)에서 저축한 것을 무상이전하는 것을 소비와 같이 보고(대가 없이 증여하는 즐거움을 사는 것으로 본다면), 그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동일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게 한다.

$$(\text{소득}) - (\text{소득세}) = (\text{순저축}^{33)}) + (\text{순소비}) + (\text{지출세}) \quad (4)$$

30) 물론 EU 국가들간에는 개인에 대한 이자소득은 거주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관련비용을 공제할 수 있게 설계한다면 이 문제는 해소될 수는 있다.

31) OECD, Fundamental Reform of Personal Income Tax, 2006, pp.83~85

32) 독일에서도 최근까지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가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33)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는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간접세의 하나로 보는 관점에 입각한 것인데 그러한 관점에 서있는 나라들—영미법계국가들—을 중심³⁴⁾으로 무상이전과세를 완화 내지 폐지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1년 입법을 통해 2010년 유산세(estate tax)를 폐지하면서 증여세(gift tax)는 존치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에서 무상이전에 대한 조세인 유산세와 증여세는 상속이나 증여라는 사건에 대한 간접세적인 성격이 있다. 그에 따라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는 주체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실제 그 부담은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처럼 간접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증여세는 유산세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전이전(inter vivos transfer)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유산세를 폐지한다면 회피할 대상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미국세법상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존치하기로 하였다.³⁵⁾ 따라서 미국에서 증여세를 남겨 놓은 것은 수증자의 입장에서 늘어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증여자가 보유할 당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제대로 하기 위함이다.³⁶⁾ 이는 캐나다의 경우처럼 유산세와 증여세를 모두 폐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자본이득의 실현의 계기로 하여 과세하는 방식³⁷⁾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을 사안이다. 한편 영국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을 취하면서 증여세에 대해서는 자본이득과세형태를 취하고 있다.³⁸⁾

미국이나 캐나다 두 나라 모두에 흐르는 조세개혁의 정신은 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자에 대해 출발선상의 형평을 강조하여 소득과 같이 과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세주권을 가진 국가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법률적으로 귀속자가 달라진다고 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에도 기초한다. 재산은 과세된 소득의 축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에는 호주(1977) 및 뉴질랜드(1992)가 포함되어야 한다.³⁹⁾

34) 대륙법계국가들은 상속이나 증여를 소득처럼 재산을 이전받는 자의 입장에서 과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나라들에서는 상속이나 증여과세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독일 및 프랑스에서는 상속증여과세 모두 취득과세형(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6, pp.260~269 ;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6, pp.238~261) ; 일본은 우리제처럼 상속에 대해서는 유산(취득)세, 증여에 대해서는 취득과세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6, pp.260~297).

35) 증여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장부가액이다. 즉 carry over basis이다.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과 불일치하는 부분이다. 여하튼 증여자의 장부가액이 그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증여자에 귀속하는 built-in gains는 수증자에게 넘어가게 되며 수증자의 한계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소득과세의 회피가 나타날 수 있다. 증여세가 폐지되면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36) 이에 따라 증여세율도 소득세율에 일치시키기로 되어 있다(Regis W. Campfield, et.al., Taxation of Estates, Gifts and Trusts, Thomson West, 2006, p.27).

37) 미국에서 2010년부터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의 재산의 취득원가는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장부가액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인수하게 된다.

38)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6, pp.140~158

나. 과세대상 설정방식

각국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제도는 상속이나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의 제도와 가장 유사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포괄개념을 도입하지는 않고 있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운영을 통해 경제적으로 보아 무상이전에 대한 경우 과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축소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없으므로 매우 제한된 범위에 국한되기는 한다.⁴⁰⁾

포괄개념에 가장 근사한 미국에서도 증여가 보통법상의 증여의 개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고⁴¹⁾, ‘재산’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증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⁴²⁾ 예를 들어, 통상의 채무면제이익은 소득으로 과세된다.⁴³⁾ 다만, 보통법상 증여의 의사(donative intent)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증여성(gratuitous)이라고 판단되는 채무면제이익은 증여로 과세된다. 증여로 과세된 것은 소득 과세되지 않는다.⁴⁴⁾ 더 나아가 용역의 무상제공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⁴⁵⁾ 소득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증여의 개념은 그렇다고 볼 수 없으며, 증여로 과세된 것은 소득과세에서 배제한다. 우리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5. 시사점

각국은 1980년말 이래 세율인하의 압력을 과세기반의 확대로 대응하여 왔다. 과세기반의 확대는 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주를 확대하는 이외에 비과세 및 공제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더불어 행정적으로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조사기법을 향상시키는 것도 기여하여 오고 있다. 본 논문과 주제와 관련해서는 과세기반의 확대가 세법상 소득개념의 포괄화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포괄적 소득개념을 도입한 나라는 미국인데 그곳에서도 소득의 개념은 성문법상 정의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판례법상 개념이 발전하여 오고 있는 정도이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완전한 형태 또는 그에 준하는 형태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각국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비록 많은 국가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율과 과세방법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39) 최명근,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2.3, pp.17~18

40)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6, p.295

41) Treasury Regulation §25.2511-1(g)(1)

42) IRC Section 2511

43) 일부 파산과정 등에서의 채무면제이익은 비과세된다.

44) IRC §102

45) Revenue Ruling 66-167

곧 과세기반을 징세상 편의한 항목에 한정하려고 한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비록 자본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실제 순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순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의 완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부족한 감이 있다. 각국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제도는 상속이나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소득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증여의 개념은 그렇다고 볼 수 없으며, 증여로 과세된 것은 소득과세에서 배제한다. 우리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부의 무상이전 중 증여를 수증자의 소득과 같이 과세할 것인지 증여자의 지출로 볼 것인지는 세제를 설정하기 나름이다. 증여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증여하는 자산의 자본이득의 실현계기로 보는 것도 대안일 것이지만 이는 해당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승계하느냐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증여재산을 수증자의 소득과 같은 개념에 입각하여 과세하지만 공제나 세율적용상 일반적인 소득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로써 증여에 대한 과세가 소득에 대한 과세와 공통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같은 소득 안에도 종합소득과 일회성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간에는 소득금액 계산 세율적용 및 납세의무확정절차상 차이를 두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적지 않은 국가에서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있으며, 무상이전과세상 형평성의 확보는 무상이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의하기 보다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IV. 현행 소득과세방식에 대한 평가

한 나라의 세제를 평가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함의를 찾아보지만 단지 다수의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여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 본 장에서는 소득개념의 포괄화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장들에서 분석한 바를 토대로 모든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인 형평성, 중립성, 법적안정성 및 단순성의 측면에서 현행 소득세제상 소득개념 설정방식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세기반확대를 위해 소득개념을 좀 더 포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증여개념의 포괄화에 맞추어 그러한 노력을 경주할 당위가 존재한다고 본다.

1. 실질적 형평성

가. 과세배제(또는 비과세)

우리 소득세제가 적지 않은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여러 방식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이 소득과세제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소득과세의 범주측면에서 당면 과제는 의도적으로 과세에서 배제하고 있는 소득을 과세범주에 포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과세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는가 하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다. 다만, 포괄적으로 소득개념을 설정하게 된다면 새로운 유형의 소득에 대해 그것을 소득에 포함할 것인가의 고민 없이 바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음은 분명하다.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춤으로써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소득의 범주를 좀 더 넓힐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과세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다면 소득개념의 포괄화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소득과세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다.

나. 증여과세와의 형평성 부족

완전포괄적 증여개념이 도입되어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증여과세 자체에도 큰 변화가 없으므로 그것이 소득과세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탐구의 대상이다. 이러한 점에 불구하고 논리적으로는 증여가 소득보다 더욱 철저하게 과세되게 된 것은 동일한 성격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적지 않은 국가가 무상이전과세를 완화해 가고 있다. 우리는 완전포괄증여개념을 도입하면서 강화해가는 외양을 보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세제상 소득과세까지 완전포괄주의로 설정해야 할 당위성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소득개념을 보다 포괄화한다면 소득과세제도 자체에 있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 때문일 것이다.

2. 경제적 효율성

조세제도가 모든 거래나 경제적 이익을 단일세율로 과세한다면 매우 높은 효율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OECD 국가가 거래 및 소득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 그룹별로 나누고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상 차이를 두고 있다. 우리 소득세제가 이런 점에서 과도하게 소득을 분류하여 중립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소득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소득으로 구분된 것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정도로 과세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방식으로 과세하고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세제가 개인의 소득과세상 투자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원적 소득세제적인 요소가 도입되

고 있는 국제적 동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법적 안정성 및 단순성

열거주의 방식의 소득과세는 포괄주의 방식에 비해 높은 법적안정성을 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국가가 기장을 요구하기에 적절치 않은 개인소득과세에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의 확정과 징수상 원천징수를 활용하는 폭이 넓으며 그만큼 제도의 운영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우리 소득과세가 갖는 이러한 장점은 포괄증여 개념의 도입으로 다소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소득인지 증여인지의 판단에 관한 불확실성 및 그에 따른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증대한 것이다.

4. 소결론

현행 소득과세제도는 몇몇 단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준 DIT방식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세율 인하문제와는 별개로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당면 과제는 비과세를 축소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소득과세법제상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소득에 대한 과세상 기민성, 그리고 포괄증여개념의 도입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갈 당위성은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 소득금액계산상 투자자산소득에 대해 순소득개념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V. 개선방안 검토

앞 장에서는 과세기반확대를 위해 소득개념을 좀 더 포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매듭을 지었다. 증여개념의 포괄화에 맞추어 그러한 노력을 경주할 당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소득세제도가 보다 경쟁력있는 조세제도가 되기 위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세율을 낮추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원적 소득세제 또는 단일세율과세제도가 뚜렷한 하나의 경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도 세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수직적 형평의 문제가 부수한다면 선택과세방식, 소득공제제도 및 재정지출의 확대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증여과세제도상으로는 일부 무리한 미실현이득과세에 대해서는 소득과세의 틀로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증여과세를 이원적소득과세상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46) 이는 개념상 소득을 포괄적 소득개념에 입각하여 이해하는가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이해하는가와 다른 문제이다.

1. 포괄적 소득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각국의 예를 보면 실정 세법상 소득의 개념을 정의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증여의 개념에 대해 그러한 시도를 한 사례도 발견하기 곤란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완전포괄 ‘증여’ 개념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굳이 소득도 논리적인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완전포괄 ‘소득’의 개념을 도입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포괄소득개념을 도입한다면 그것은 ‘개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정도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포함할 것이지만 실정법상 소득과세와 무상이전과세간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은 소득과세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무상이전에 의한 경제적 이익은 마치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이은 하나의 별도의 소득그룹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도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방식을 각각 설정한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괄소득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의제소득’의 개념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된다. 다만, 소득의 범주에 드는 것들 사이의 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만큼은 ‘의제이자’ 내지 ‘의제배당’간의 대립은 존재할 수도 있겠다. 포괄소득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새로운 유형의 소득에 대해 과세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포괄소득개념에 관한 규정은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조력을 받게 될 것이다.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의제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 포괄소득개념이 도입될 경우 기존의 소득항목들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그것들에 대한 과세는 확실하게 규정될 것이지만 새로운 유형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소득’ 개념에의 포섭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많고 이 때 조세회피방지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으로 과세될 개연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포괄소득의 개념은 하나의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것이 가져올 불확실성에 비해 과세근거를 제시하는 기능이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한다면 현행 각 소득 유형별 규정을 포괄적으로 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확실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2. 유형별 포괄주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

현행 세법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유형별 포괄주의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등에 유사포괄주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좀 더 보완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전체 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따르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원용하는 방식의 규정에서 탈피하여 ‘상법상의 상행위 내지 이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얻는 소득’ 정도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⁴⁷⁾ 또는 법인에 대한 과세에서처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익금으로 보는 방식을

47)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이텍스, 2007, p.204

도입할 수도 있다. 이는 사업용 계좌제도의 도입에 의해 그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보인다. 참고로 독일의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장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결산을 실시하는 기업은 과세연도의 종료시 적정한 회계처리에 대한 상법상 규정에 따라 계상되는 기업재산을 확정하고 현재의 기업재산과 직전 사업연도말 기업재산간의 차액에서 자본감소액만큼 증가시키고 자본증가액만큼 감소시킨 금액을 사업자의 소득으로 하게 되어 있다. 소득세법은 기업재산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계상가능한 경제체의 금액과 부채금액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 개인재산은 기업재산과 구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약식 소득계산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⁴⁸⁾

사업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자산 또는 경제적 지위’의 양도에 따른 소득,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처럼 ‘권리’나 ‘지위’의 청산에 따른 이득으로 규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에 관한 규정⁴⁹⁾을 참조하여 ‘기타 이자소득,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사업이나 인적 용역 또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⁵⁰⁾ 정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현행의 완전포괄증여의 개념은 소득의 유형별 포괄주의의 개념에 적합한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증여를 소득의 하나로서 이해한다면 소득항목유형들이 포괄적으로 정의되는 데 그 한 유형인 증여소득이 이미 완전포괄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⁵¹⁾

현행 소득세법상의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은 하나씩 열거하다가 마지막에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완전포괄증여규정은 ‘증여’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의 예로서 몇 가지 증여사례를 들고 있다. 현행의 ‘유형별 포괄방식’을 ‘유형별 완전포괄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자소득을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경제적 이익’ 정도로 앞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후자의 방식은 전자의 방식에 비해 보다 완전한 것이다. 증여과세의 대상도 1997년 이런 방식의 제한적 포괄주의 규정⁵²⁾이 의제방식으로 도입되었다가 2004년 완전포괄증여 규정이 도입된 것이다. 현행의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의 표현은 포괄적인 성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굳이 삽입하는 것은 확실성을 보다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쟁송의 단계까지 가지 않는 바에는 확실성을 높이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역시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개별 소득유형별 포괄개념 정의는 소득전체에 대한

48)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4.6, pp. 100 ~110

49) 이는 일본의 잡소득에 관한 규정과도 유사한 것이다.

50)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차목 참조

51) 이미 소개한 바 있지만 미국의 1894년 소득세법, 그리고 북한의 세금관련 규정은 증여를 증여소득으로 보고 있다.

52)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포괄개념을 도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소득구분상 보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에 불과할 것이다. 불확실성의 문제는 소득전체에 대한 포괄소득개념을 도입한 것에 근사할 것인데 이러한 방식의 갑작스런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방식 즉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의 표현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의 유형별 포괄주의적 규정을 확대한다면 ‘의제배당소득’의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배당소득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제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상법상 배당과 다르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보자는 의미의 ‘의제배당’은 있을 수 있지만 ‘의제배당소득’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가 ‘의제배당’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타당한 것이다.

유형별 포괄주의의 확대는 각 유형별로 순소득금액에 의한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 각 유형별 소득이 공평하게 과세되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과세소득을 포괄화한다면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도 동일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산소득의 경우 그것의 국가간 과세관할의 조정 그리고 금융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유지하거나, (순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면서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과세 이원적 소득세제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겠다.

3. 소결론

과세기반확대를 위한 것이라면 비과세를 축소하는 것이 지름길일 것이다. 법제적으로 보면 소득의 개념을 포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굳이 포괄적 소득개념을 창설하는 것보다는 개별 소득별로 유형별 포괄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보다 확실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의 표현은 당분간은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기적으로 방향타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증여와의 관계에서는 증여를 마치 소득의 한 분야로 보는 개념에 입각하여 보는 것이 현행 소득세제와 증여세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소득세제가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한다면 더욱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소득과세와 증여과세가 중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과세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원적 소득세제적인 요소를 강화하면서 상속과세는 폐지하고 증여과세는 이원적 소득세제상 자본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순소득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VI. 결 론

세제는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결과물인 만큼 무상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미진한 점도 많지만 그간 제도와 집행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다. 나라마다 자신의 세제의 매력을 뽐내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군데군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우리의 소득세제상 문제가 한다면 과세하지 않는 것이 많고 세금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우리 소득세제상 과세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많다는 문제점을 조세정책적인 관점보다는 소득개념 설정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결론은 소득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새로운 유형의 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기민성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화를 확실성의 가치를 배제하면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유형별로 해당 소득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의 방식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완전포괄증여개념과 비교하여 포괄성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지만 소득세가 증여세의 형제조세로서 큰 부족함은 없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포괄주의 과세는 과세기반의 확대와 그를 통한 형평성의 제고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중립성과 간편성의 제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현행 완전포괄증여개념은 일부 과도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법제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무상이전과세에 대한 시각과 철학이다. 거주지이전에 전혀 법적 장애가 없는 현대사회에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고부담 체계로 유지한다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까? 현행 취득과세방식으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세계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폐지하고 오히려 국적을 이탈할 때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출국세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생각 그리고 무상이전도 하나의 지출에 해당한다는 생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소득과세상 포괄주의의 기반이 집행측면에서도 확보가 되면 이원적 소득세제, 단일세율제도, 지출세 또는 cash flow tax적인 요소의 도입도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제도가 지향하는 제 가치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혁은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소 위험을 감내하면서 선택한 결정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단순히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patchwork식의 작업으로는 곤란한 것이므로 나라 경제를 포괄적으로 설계하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다.

참고문헌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2004.6, 한국조세연구원
- 박명호, 정희선, 「OECD주요회원국의 조세지출현황 및 비교분석」, 한국조세연구원(세법연구센터), 2006.8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2004.6, 한국조세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EU회원국들의 법인세율 인하경쟁과 정책적 시사점”, 2004.5.25
- 안경봉, 정희선, 무상이전자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한국조세연구원(세법연구센터), 2006.11
-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2004.6, 한국조세연구원
-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이텍스, 2007
- 김완석, 「법인세법론」, 광교이텍스, 2007
-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2004.6, 한국조세연구원
- 이태로, “과세소득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6
- 재정경제부,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해설」, 2004.2
- 최명근,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2.3
- 현진권, “소득세제의 단일세율”, 국세월보, 2005.9
- Ministry of Finance(Japan), Dual Income Taxation, 2004
- IFA, The tax treatment of transfer of residence by individuals, 2002
- IMF, US Tax Reform: An Overview of the Current Debate and Policy Options, 2005.7
- John K. McNulty, et. al.,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Thomson West, 2003
- OECD, Fundamental Reform of Personal Income Tax, 2006
- OECD,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2006
- Regis W. Campfield, et.al., Taxation of Estates, Gifts and Trusts, Thomson West, 2006
- The Treasury(new Zealand, Peter Wilson), An analysis of a cash flow tax for small business, 2002.12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Yoon Oh*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study the scope of taxable income item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cept of 'income'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Act('IITA') of Korea. Not a few items of income are found to be excluded from the taxable income items. One of the key reasons of such exclusion is the government policies such as boosting stock markets. In this sense the issue of how to construct the concept of 'income' does not matter so much.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do not seem to be so different in this regard. Since '80's major foreign economies have led tax competition by broadening tax base and lowering tax rates. In this process the scope of taxable income items has expanded while that of tax benefits has shrunk. But the expansion of scope of taxable income items was accomplished not by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but by the addition in the list of taxable income items. Even in the U.S. where the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is generally accepted, the statute does not give the definition of 'comprehensive income'.

Although the trends in and out of this country do not seem t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they may not excuse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cheduler income system of Korea that it is devoid of any reliable statutory mechanism to cope with the issue of taxation on new types of income.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whether it is achieved in a full and complete manner or not, will surely help to improve the equity, neutrality and simplicity of income taxation of Korea.

In this juncture the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for each type of statutory income such as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employment income and so forth other than that for all types of income in one shot may serve as a good compromise to address the issue. Currently such concept has been already introduced for two types of income — interest income and dividend income — in the IITA. If it is extended step by step to other types of incomes such as employment income, business income and so forth, the actual tax base will be broadened as to approach to the ideal tax base under the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in the future. One thing that should be cherished in the heart of the policy makers in this process is that the comprehensive income is 'net comprehensive income' rather than 'gross comprehensive income' or 'comprehensive revenue', which means that the deduction of 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 attributable has to be allowed once a type of income is defined in a comprehensive manner in the IITA.

<Key words> income tax, comprehensive income, taxable income, tax base, 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 equity, neutrality, simplicity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Hanyang University